COMPA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ANNUAL REPORT



COMPA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목 차

발간사	01
연구산업 개요	02
전담기관 현황	04
연구산업 진흥 추진 업무 및 성과	09
부록	55

발간사

우리나라는 2022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5.21%)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부 R&D 예산이 최초로 3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R&D 투자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해 10월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8월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2023년 3월 「2023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연구산업 진흥과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2년 8월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연구산업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매월 연구산업 분야별 기술·시장·정책과 관련한 주제를 발굴, 조사·분석한 「연구산업 이슈페이퍼」를 매월 발간(총 12편 발행)하여 연구산업을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술혁신학회, 정책학회, 생산제조학회 등 연구산업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유관학회에서 연구산업 현황 및 정책 발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연구산업 주체와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국내 연구산업 기업의 분야별 성장을 위한 맞춤형 신규 사업 기획과 세부 실행 방안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 연구산업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연구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2022년 8월 전담기관 지정 이후 2023년까지 약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드리고자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연차보고서(2022~2023)'**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활동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되 우수한 결과는 더욱 집중하여 연구산업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주체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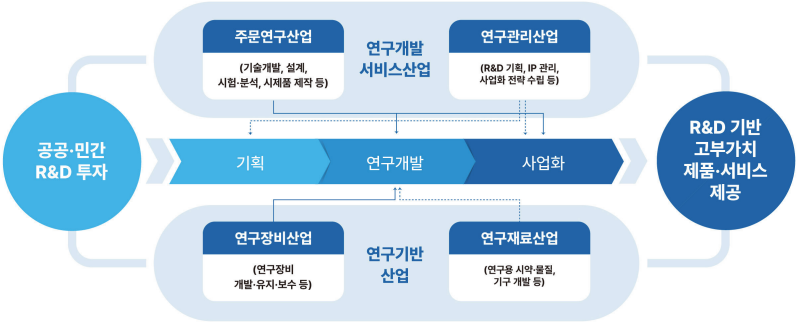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연구산업 개요

정의

R&D 全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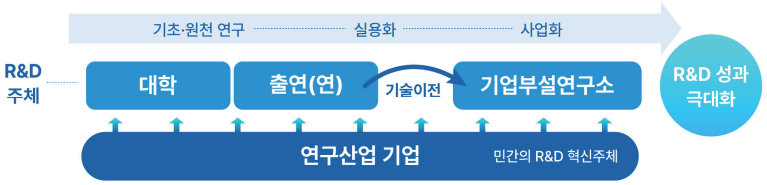
연구개발서비스산업(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주문연구 서비스 유형 :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을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관리 서비스 유형 : R&D 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연구장비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재료 유형 :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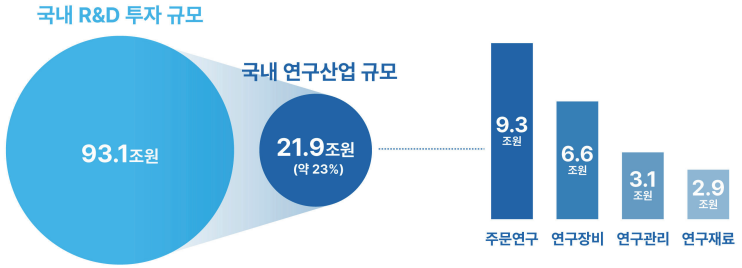
연구산업은 R&D 全 주기에 걸쳐서 산·학·연 주체들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주체

※ 국가R&D시스템 속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에 이은 제4의 혁신주체



연구산업

[2020년 국내 연구산업 시장현황]



국내 산업 규모는 '20년 **21.9조 원***으로 추산되며(연평균성장률 8.0%),
이는 **국내 R&D 투자규모**(약 94조 원)의 **약 23%**

* 5,900여개社 / 주문연구(9.3조 원), 연구관리(3.1), 연구장비(6.6), 연구재료(2.9)

※ 글로벌 R&D 투자규모(23.3천억$) 대비 연구산업 규모(8.2천억$)는 **35% 수준**

⇒ **국내 연구산업 규모 또한 해당 수준으로 성장 가능**

(출처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연구산업 중요성

•국가R&D 생산성 향상

R&D 과정에서 전문주체들과의 협업·분업을 촉진시켜 R&D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R&D투자 선순환 구조

국내 R&D투자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투자가 다시 국내 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형성

※ 정부R&D 예산('05-'21년)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81.3%가 외산

(출처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전담기관 현황

01 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근거 및 목적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 · 확산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역할·책임(R&R, Role&Responsibility) 및 기능

역할·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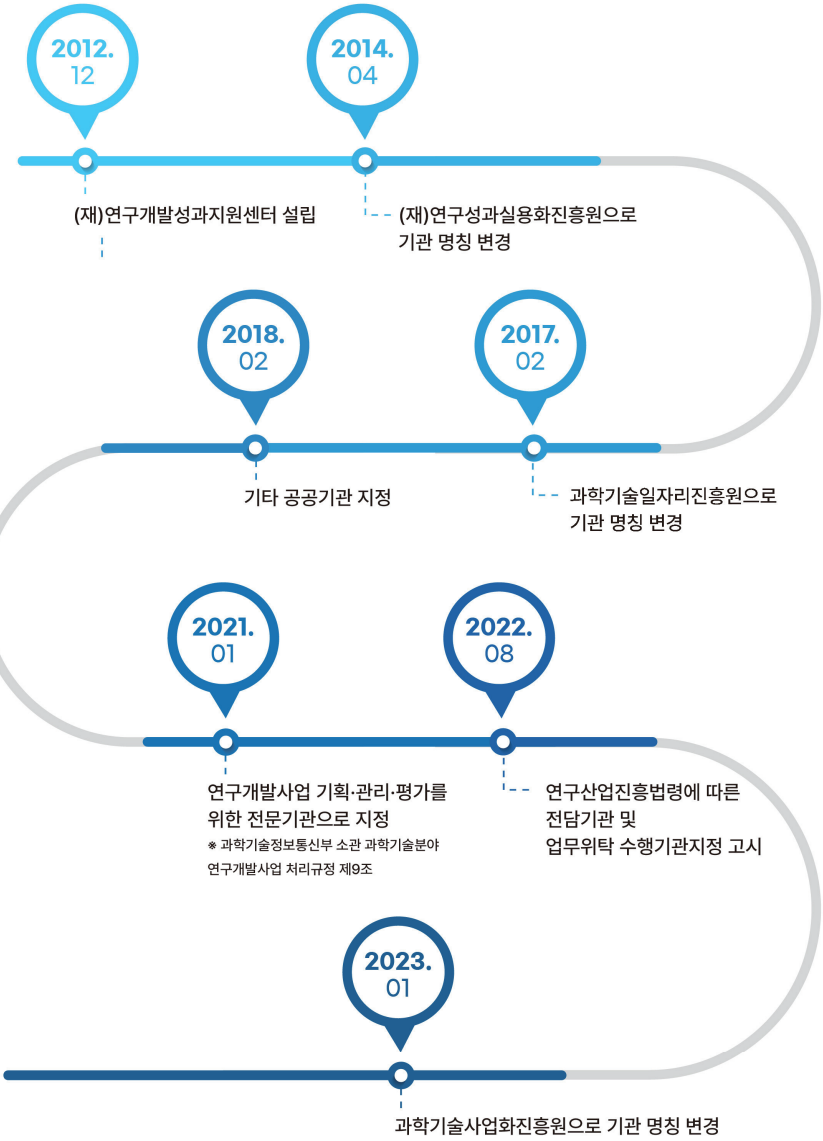
연구산업 진흥과 공공연구성과 활용·확산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 연구산업 활성화, 공공연구성과 맞춤형 실용화·창업 지원을 통해 연구산업 진흥 및 산학연협력을 선도

핵심기능

연구산업 진흥 및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산업 진흥	· 시장수요 기반 연구산업 전분야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확대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 성과활용·확산 정책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플랫폼 고도화 · 수요연계 기술실용화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 촉진 · 과학기술기반 실험실창업 확대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연혁


2012. 12
(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설립
2014. 04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17. 0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18. 02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21. 01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2022. 08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업무위탁 수행기관지정 고시
2023. 01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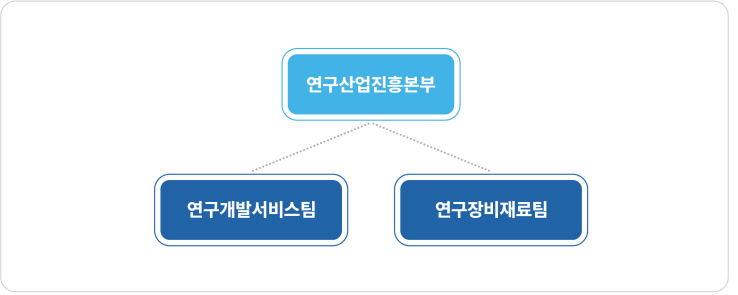
02 연구산업 진흥 전담 조직 현황 및 역할

조직체계

1본부* 2팀(총 12명)**

* 2022년 연구산업진흥실에서 2023년 연구산업진흥본부로 규모 확대

** 본부장(1명), 연구개발서비스팀(6명), 연구장비재료팀(5명)



전담기관 업무 및 역할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52호, 2022.8.30.)

※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이전인 2021년부터 관련 업무 담당하여 지속 지원

전담기관 주요 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 · 행사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탁 업무 범위	·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 *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연구산업진흥단지) · 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연구산업 진흥 추진 업무 및 성과

1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11

2 | 연구산업 R&D 및 생태계 혁신 지원 29

3 | 연구산업 네트워킹 강화 지원 37

4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사업 수행 지원 47

5 |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 시행 지원 5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혁신으로 선도하는 연구산업 정책 지원 ···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산업 진흥 정책 지원에 필요한 법 제정 및 주요 계획 수립 지원, 연구산업 분야별 산업 동향 및 현황 조사분석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0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제정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지원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산업 현황 조사·분석 및 토론회 개최 등 지원

※ 2021.4.20. 제정, 2021.10.21. 시행

▸▸ 제정 의의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본 법률(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부수적 조항에 머물렀던 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군을 R&D 연동산업이라는 '연구산업'으로 확대하여 규정

[연구산업진흥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2조	연구산업 정의	· 연구산업을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 연구재료 4개 분야로 정의
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조	연구산업 통계	· 연구산업 진흥 위한 실태조사 통한 연구산업 통계 작성 및 활용
6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 연구산업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신고제도 통해 집중 지원
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산업 기술 발전 및 고도화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확대 추진
8조	연구장비 성능평가	· 성능평가제도 운영 통해 국내 개발 연구장비의 신뢰성 확보하고 우수 연구장비에 대한 조달 우대
9조	연구산업진흥단지	· 연구산업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
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지원
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지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협회 및 전담기관 등의 제정(안)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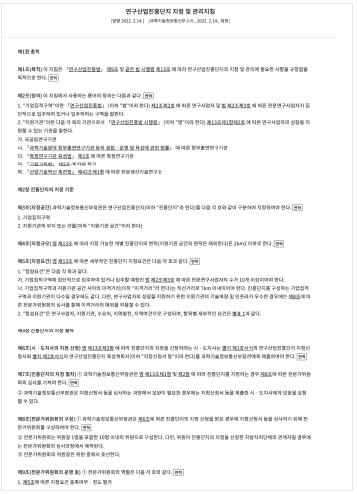


연구산업진흥법 하위규정 제정 공청회

연구산업진흥단지 관리지침 제정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수립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22.02.14.)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 2022. 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 2.1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판례

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연구시설기관 및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문연구시설기관가 집적되고 밀추어야 업가나 업무하게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구시설기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2장 진흥단지의 지정 기준

제3조(지정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판례

1. 기업집적구역

2. 지원기관에 부적 또는 전문기관 "지원기관 공간"에서 한다)

제4조(지정규모) 영 제12조 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1km2 이하로 한다. 판례

제5조(적용요건) 영 제12조 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판례

1. "경쟁력갖"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집적구역에 관련적인은 입주계약은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영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문연구시설기관이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업집적구역과 기관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1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시설기관 유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예정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2. "경쟁력갖"은 연구시설법,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활한, 지역에전이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신청단지의 지정 절차

제6조(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판례

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에서 제척된다.

③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과 같다. 판례

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 적도 평가

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대) 도출

③ 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진흥단지의 관리

제10조(관리계획 등) ① 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매년 시·도지사로 한다. 규칙

② 진흥단지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단지의 입주한 전 연구시설기관의 현업활동 지원

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 유지 · 보수 및 개량

③ 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기획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획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 · 제로 등의 달력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을 법령으로 정하고, 다만 필요 시 이 지침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시행령 10·11·12조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

※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22.04.06.)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 지원

분야별 기획위원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반영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 지원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공청회 개최(2022.06.0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 의결(2022.08.26)



- **일시** 2022. 6. 7.(화), 14:00~15:30(90분)
- **장소** SKY31 SUN+CLOUD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29) 롯데월드타워 31층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 **문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02-736-9044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씀
14:10~14:25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발표
14:25~15:10	패널 토론
15:10~15:30	질의 · 응답
15:40~	폐회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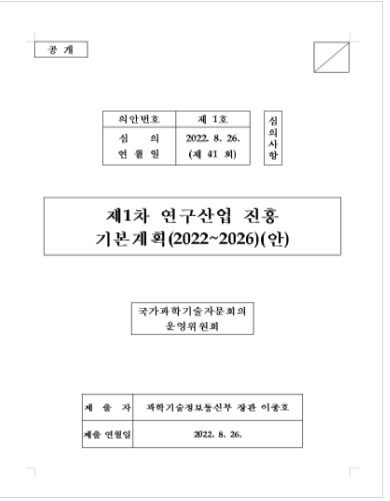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추진근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21.10.21.)에 따른 첫 법정계획(제4조)으로 연구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기본계획 포함 사항
①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②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③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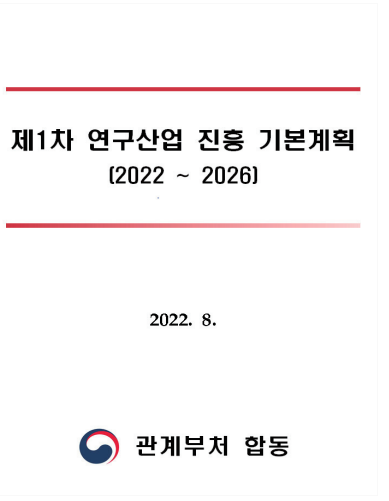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호	심의사항
심 의 연 월 일	2022. 8. 26. (제 41 회)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2. 8. 26.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 ~ 2026)

2022. 8.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계

연구산업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로 활용



기획위원회 운영 2021.06.~2022.02.	· 제1차 기획위원회 개최(5회, 분과별 이슈 도출): '21. 6. 22. ~ 7. 1. · 5개 분과별 추진과제 후보군 발굴: '21. 7. 5. ~ 8. 4. · 제2차 기획위원회 개최(추진과제 검토): '21. 8. 11. ~ 8. 18. · 연구산업 현황분석 추진(표준산업분류 기반), 추진과제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전략 도출: '21. 8. 19. ~ 10. 29. · 제3차 기획위원회(총괄) 개최(현황 및 추진전략 검토): '21. 11. 5. · 제4차 기획위원회(총괄) 개최(기본계획(안) 검토): '22. 2. 10.
공청회 개최 2022.06.07.	· 연구산업 산·학·연 관계자 대상 공청회 개최: '22. 6. 7.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2022.07.	· 연구산업 세부분야별 간담회 개최: '22. 7. 6., 12.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의결 2022.08.26.	·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제 1호 안건 (2022.08.26.)

현황진단 및 추진 방향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기업 규모가 작고 기술역량 부족으로 성장 정체 ⇒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유도 [전략1]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단독 R&D 선호와 외산 의존 경향으로 수요 저조 ⇒ 수요 발굴채널을 다각화하고 新수요를 적극 창출 [전략2]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제품·서비스의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활용 주저 ⇒ 품질·성능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용성과를 확산 [전략3]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가 未형성되어 있고 인력 확보·유지에 애로 ⇒ 산업이 자생토록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장치 강화 [전략4]

세부 추진 과제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 및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전략 1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기술역량 강화
  - 단계별 R&D 지원모델 설계
- 미래시장 선점
  - 신서비스/제품 개발
- 글로벌 시장 진출
  - 수출 지원센터 설립

- 연구산업 분야로의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기술개발 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 연구산업 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토록 新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토록 맞춤형 정보 제공, 판로개척 등 지원

1-1 연구산업 신규 창업 활성화

가.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
(BM 개발부터 후속 사업화 R&D까지 패키지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기술출자·보증 등을 위한 심층 기술가치평가지원)

1-2 기술혁신 기반 기업 역량·경쟁력 제고

가.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Scale-up, 강소기업 도약)
나. 연구장비 개발 단계 솔루션지원(사업화R&D, 제품성능개량)
다. 연구재료 산업기반 형성(상품화 지원, 전략품목 발굴)

1-3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新서비스·제품 개발

가. 미래 연구개발新서비스 개발
(미래 활용될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나. 미래 선도 연구장비 개발

1-4 글로벌·대형化를 통한 성장 촉진

가. 연구산업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 등)
나. 연구산업 기업 투자유치 촉진

전략 2 수요 창출을 통해 연구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수요 발굴채널 다각화
  - 연구산업 코디네이터 운영
  - 공공기관 대상 보급 확대
- 거래 활성화
  - 바우처 확대/신설
  - 연구산업마켓플레이스 구축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국산 연구장비·재료 新수요 창출
- 바우처 사업 확대·신설, 거래플랫폼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산업 수요-공급자 간 정보 공유 및 거래 활성화

2-1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체계 다각화

가. 협력 네트워크 강화(산업계 협단체, 지역협의회 운영)
나. 코디네이터 지정·운영(매칭-day 개최,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과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 간 만남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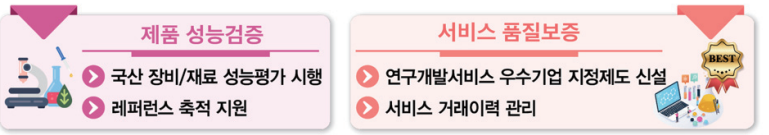
2-2 국산 연구장비·재료 新수요 창출

가. 공공기관 대상 보급 촉진
나. 「국산연구장비활용랩」 확산
다. 대형 연구인프라 연계

2-3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거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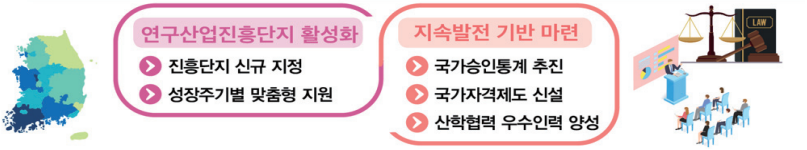
가.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바우처 참여 확대
나. 국산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신설
다. 연구산업거래플랫폼 구축

전략 3 연구산업 신뢰도를 제고하여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국산 연구장비·재료에 대한성능평가,레퍼런스 축적 등 성능 검증활동을 강화하고, 산업공정 도입을 지원하여 국산 제품의 활용 촉진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대상 우수기업 지정, 거래이력 관리 등 품질 보증체계를 마련, 사업화 지원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서비스 활용 촉진

전략 4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국가자격제도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강화
- 연구산업 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토록 新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토록 맞춤형 정보 제공, 판로개척 등 지원

4-1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 연구산업 국가승인통계 추진
나. 국가자격제도 신설
다. 연구관리산업 자생력 강화

4-2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가. 공공분야 연구인력 활용
나.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양성
다.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4-3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활성화

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나. 진흥단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4-4 연구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가. 관계부처·기관 공조체계 구축
나. 산업계 정책참여 강화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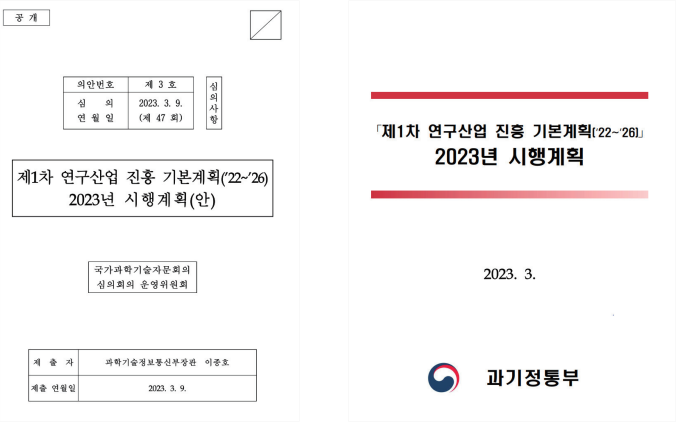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3.03.09.)

추진근거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의 목표 및 14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시행계획(안)을 수립·추진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 의결(2023.03.09.)

주요 내용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주문연구 기업의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연구장비 수출 협의체를 발족('23.1월)하여 제품 패키지화, 국제전시회 참여 등 글로벌 진출방안 모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확대('23년, 45억원)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 연구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처음으로 실시 (2개 품목, 주사전자현미경·유전자증폭장치)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 제고 추진 · 산·학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연구장비 개발, 시험·분석 분야 등)하고 신규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단지(대전·부산)를 연구산업 혁신거점으로 본격 육성



공 개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연 월 일	2023. 3. 9. (제 47 회)

심의사항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2023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3. 3. 9.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2023년 시행계획

2023. 3.

과기정통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2023년 시행계획

02 연구산업 분야별 동향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간

매월 국내·외 연구산업 분야별 기술·시장·정책과 관련한 주제를 발굴, 조사·분석하여 연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이슈페이퍼 발간 추진

※ 매월 발간된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
(진흥원 홈페이지/연구산업 홍보 zone 활용)

[2023년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간 현황]

발간 월	분야	주요 내용
1월	연구장비	일본 연구장비 관련 동향 및 정책시사점 (연구장비 기업 현장 방문 중심)
2월	주문연구	국내 시작품·시제품 제작 산업 실태 및 시사점
3월	연구장비	연구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4월	연구관리	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5월	연구장비	국산 연구장비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성과의 산업화 전환 사례 분석
6월	주문연구	의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서비스(CRO, CDO, CMO, CDMO) 동향 및 시사점
7월	연구장비	국산 연구장비 활용 우수 연구사례 분석 및 시사점
8월	연구관리	국내 R&D 기획·관리(PM)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9월	연구재료	연구재료 우수 사례 분석
10월	주문연구	글로벌 시험·검사·인증(TIC) 서비스 시장 분석
11월	연구재료	연구재료 정책·산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12월	주문연구	글로벌 제약 R&D 아웃소싱 시장 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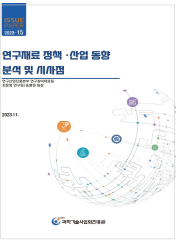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월 발간한 연구산업 이슈페이퍼에 대한 기관 자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유관기관 포탈 업로드* 및 언론 보도 추진하여 연구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확산 촉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생물학정보연구센터(BRIC), 생명공학포털(BioIN)

[2023년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간 관련 언론 보도 현황]

No.	매체명	게재일자	주요 내용
1	YTN 사이언스	2023.2.17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산업이슈페이퍼발행(ytn.co.kr)
2	특허뉴스	2023.6.20	과기정통부, IP서비스대가적정지급가이드라인필요성진단: 특허뉴스(e-patentnews.com)
3	뉴시스	2023.7.18	'임상수탁'글로벌업체들M&A활발..."서비스영역확장": 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newsis.com)
4	메디 소비자 뉴스	2023.7.19	"CRO기업, 해외시장에 눈 돌리고 CDMO는 전문성 갖춰야"
5	의학신문	2023.7.18	국내 CRO·CDMO 경쟁력 강화...정부 체계적인 지원 필수
6	조선비즈	2023.9.4	[과학게시판]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국내 R&D 기획·관리(PM)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행
7	조선비즈	2023.10.19	[과학게시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연구재료 우수사례 소개' 이슈페이퍼를 발간
8	BBS NEWS	2023.11.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글로벌 TIC 서비스 시장 분석이슈페이퍼 발간

03 연구산업 분야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구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구산업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연구산업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여 협의회 구성 및 기업간담회 추진 등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 제1차 연구산업 협의회 ('22.9.21.)

법정 계획 발표 후 13명의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개최를 통해 전담기관의 역할 홍보 및 추후 협의체 위원 선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발굴

▸▸ 제2차 연구산업 협의회 ('22.12.07.~08.)

다수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2」에서 시작품 제작을 통한 공공기술 Scale-Up 전략 및 제작기업 육성 방안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미래선도연구장비개발사업 연구책임자 간담회 ('23.5.11.)

미래 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별 연구성과 공유 및 성과 달성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장비 분야 산·학·연 간담회 ('23.6.2.)

연구산업을 통해 추진중인 연구장비 산업육성 지원사업 안내 및 국내 주요 기업의 장비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여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R&D 기획 서비스 전문가 간담회 ('23.6.28.)

국내 R&D 기획 컨설팅 분야 참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산업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등 이슈사항 제언 등 의견수렴

04 내부 역량 강화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연구산업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인 연구산업 정책기획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업무 집중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산업 정책 역량 강화 세미나

연구산업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기획 역량 증진 및 연구산업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2023년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간 현황]

구분	추진일자	주요 내용
1	2023.01.23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 연구장비 개발 지원 방향 및 국산 연구장비 활용 확대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 및 활용 지원 확대 방안 내부 세미나 개최
2	2023.02.28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2월호 주제인 국내 시작(제)품 제작 산업 실태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내용 검토 및 향후 개선 사항 논의
3	2023.03.30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100대 미래 소재 현황 및 지원 방향 검토 내부 세미나 개최
4	2023.06.26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6월호 주제인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내용 검토 및 향후 개선 사항 논의
5	2023.08.18	R&D 기술 기획을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및 업무 적용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2

연구산업 R&D 및 생태계 혁신 지원

···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연구산업 생태계 혁신 선도 ···

연구산업은 R&D 진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국가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산업 기업 성장 및 생태계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제안, 생태계 구축, R&D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01 연구산업 분야별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 개편 방안 수립

연구산업 분야 맞춤형 육성사업 기획 및 개편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산업 분야별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 개편 추진

▸▸ 신규사업 기획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 동력을 통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산업 분야별 육성 위한 신규사업 기획

❖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2023년 신규)

목적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R&D성과 및 생산성을 제고
예산	'23년 4,800백만원
지원내용	연구산업 지원기관을 지역 연구사업자의 조력자로 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지역 연구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연구산업육성-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2022~2023)

목적	주문연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 혁신성 및 주문연구산업 활성화 촉진
예산	'23년 3,150백만원
지원내용	주문연구 기업의 성장단계(기술창업→Scale-up→글로벌 강소기업)에 맞춰 기술개발 및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술창업 지원	Scale-up	글로벌 기업 도약
지원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대상	주문연구 기업 창업 예정인 연구자(교원) or 창업 3년 이내인 주문연구 기업 (未신고기업)	창업 3~10년 + 매출액 10억 원 이상 주문연구 신고기업 (수요·투자 확보 또는 고성장 기업)	창업 7년 이상 + 매출액 50억 원 (수출액 3만 불) 이상 주문연구 신고기업
지원내용	BM 고도화, 서비스 상용화·구현을 위한 사업화R&D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 고도화	국가전략기술 육성 또는 글로벌 수요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등
지원금액 / 기간	연 2억 원 내외 / 2년	연 3억 원 내외 / 2년	연 5억 원 내외 / 3년
수행형태	연구관리기업 컨소시엄	단독	-

▸▸ 미래연구개발서비스 테마 발굴 지원(2023년)

'미래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 테마 발굴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연구산업육성사업 내 미래연구개발서비스개발 지원 통해 新서비스 모델 및 BM수립 등 新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3개월), 신서비스 상용화 지원(2.5년)

< 2023년 미래연구개발서비스 지원 테마>

테마명	개요 및 주요 내용	
화학 / 나노 / 에너지/바이오 특화형 M&S 서비스	화학공정, 나노소재, 에너지 플랜트, 의료기기 등의 산업분야에서 제품 및 공정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및 공학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대한 가상실험 및 시뮬레이션 기반의 검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념] 기존 자동차, 조선, 건축 등 물리적 설계 중심의 M&S 서비스와 차별화되어 화학적/생물학적 설계와 관련된 분야에 특화된 전문 M&S 서비스	
	서비스 핵심기술	· 화학/에너지/나노/바이오 특화형 디지털트윈 구현기술 · 공학해석 SW 기반의 분야별 시뮬레이션 기술 · M&S 결과 기반의 설계 최적화 기술 등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에너지 플랜트 강건 설계를 위한 M&S 서비스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계통 연계 기반 수소생산 플랫폼 최적 설계 · 화학공정 내 반응기 및 배관 최적 설계 등
AI 기반의 스마트부품 설계 및 검증 서비스	반도체 IP 등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된 AI를 활용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기기, 지능형 CCTV 등에 요구되는 스마트 부품용 칩/회로에 대해 설계 및 검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념] AI반도체, 센서 칩 등을 포함한 스마트부품의 회로 설계 및 검증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설계 지원 및 검증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핵심기술	· 클라우드 기반의 칩/소자 및 회로 적합성 검증 플랫폼 구현 · 칩/소자/회로 설계 및 검증을 위한 AI 추론 기술 · 칩/소자/회로 설계 검증용 AI SW 솔루션 개발 등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자율주행 자동차용 스마트 부품 설계 검증 · LNG 벙커링 선박의 유출 및 Boil-off 모니터링 시스템용 부품/기자재 설계 및 검증 서비스 · 스마트공장 안전/환경 모니터링 설비의 회로 검증
빅데이터 기반 독성 및 인체유해성 사전평가 서비스	기업의 제품·공정 R&D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신소재·물질에 대해 국내외 논문, 독성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 빅데이터 기반의 컴퓨터 독성학 기술을 활용한 인체유해성 사전검토 등 스크리닝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념) 화장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 기업 R&D 현장에서 신물질/소재 채택을 위해 독성/인체유해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품 적용 가능성 및 독성/유해성 판정 사례 등에 대한 Report를 제공 *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과 별개로 기업 R&D 과정에서 선제적 자체 평가를 통한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e-Test 서비스를 의미	
	서비스 핵심기술	· 국내/외 독성/인체유해성 평가결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체적용 형태 및 제품 유형별 소재/재료의 독성/인체유해성 사전평가기술 · 비대면 플랫폼 기반 서비스 프로시져 개발 등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내 주요 성분의 독성/인체유해성 사전평가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사전평가 · 유아용품 적용 소재/물질의 독성/유해성 사전 평가 · 방향제 등 에어로졸 타입 생활용품의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유해성 사전 평가 등

Digital Twin을 활용한 가상 신뢰성시험 지원 솔루션	소재/부품 및 제품, 공정 등을 Digital Twin 기술을 통해 모사하고, 이에 대한 공정/운전조건, 환경인자 등을 입력하여 유효수명 및 고장율 등을 추정하는 가속수명시험(ALT)를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SW 솔루션 [개념] 기존 물리적 실험 방식의 신뢰성 시험과 차별화되어 가상으로 보다 다양한 환경요인, 공정/운전조건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Virtual Eng. 기반의 가상 신뢰성 테스트 서비스를 의미	
	서비스 핵심기술	· KS/JIS/MIL-STD 등 국내/외 표준 신뢰성 테스트 항목에 부합하는 ALT 시뮬레이터 개발 · 가상 신뢰성 시험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에 따른 ESS 고장율 추정 · 전력변동에 대응한 수전해 설비 내 스택의 유효 수명 추정 · 건축 내/외장재 내구성 및 내후성(Weatherability) 테스트 · 수소차 수소저장용기의 내구성 및 신뢰수명 추정 등
반복적 시험/테스트를 지원하는 Lab Automation 솔루션 서비스	반복적인 실험 및 분석 등을 로봇, AI, 실험 자동화 SW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ab Automation 솔루션 (개념) 기업 R&D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AI, 로봇, RPA, 자동 Data 수집 SW 등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반자동화된 Lab 솔루션을 제작/판매하는 서비스	
	서비스 핵심기술	· 시료 전처리용 RPA 설계 · 반복형 테스트를 위한 시료 이동 및 테스트용 Robot Arm 개발 · 실험환경 균일성, 테스트 결과 Reporting 등 실험지원 AI SW 개발 · Lab Automation 솔루션 개발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파괴강도, 탄성도, 인장강도 등 물성 테스트용 Lab Automation 솔루션 · 내열/내화성, 유해가스/물질 누출 우려 등 고위험 테스트 특화 Lab Automation 솔루션 · 멀티코터 등 클린룸 내 테스트를 지원하는 Lab Automation 솔루션 등
고정밀/지능형 목업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	급증하는 스마트부품, 스마트기기 수요에 대응하여 설계안에 따라 부품/모듈의 외형 및 핵심 기능을 포함하는 고정밀 목업 제작을 위한 3D 프린팅 기반 시제작 서비스 (개념) 3D 프린터를 통해 시제품/목업의 외형을 제작하고, IoT 디바이스, 임베디드 SW 등을 통해 스마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고정밀/지능형 목업 및 시제품을 제작해주는 서비스	
	서비스 핵심기술	· 3D 프린팅, 정밀 CNC 밀링머신 등을 활용한 소형/정밀 부품 외형 제작 기술 · 시판 센서/반도체 기반의 스마트 회로 설계 및 목업/시제품 조립 기술 ·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협업 플랫폼 개발
	도출가능한 신서비스 (예시)	· 지능형 설비제어 부품 시제작 서비스 · 스마트 완구(Toy) 시제작 서비스 · 이미지센서 기반 스마트 가로등 시제작 서비스 등

▸▸ 사업 개편

연구산업별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2024년 연구산업 육성사업 개편 추진

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 육성	▸	출연연 주도 시작품 제작 지원에서 시작품 제작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서비스 고도화, 역량강화를 통한 제작경험 축적 등을 중점 지원
기술거래 전문기업 육성	▸	연구관리 혁신서비스개발로 사업명 개편하여 기업의 기술거래 활동 지원에서 '연구성과 활용 단계'에서 필요한 혁신서비스 개발·검증 중점 지원

02 연구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연구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R&D 서비스, 제품 거래 등 연구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련의 성과들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 연구산업 거래플랫폼 IS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검토 신청

연구산업 거래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하여 플랫폼 구축 필요성, 기능, 운영체계 소요 예산 등을 도출하여 ISP 수립 지원

~2022. 12 ISP 최종 산출물 수립

2023. 01 ISP 최종 산출물 검토 및 보완
* 연구산업거래플랫폼 ISP 용역 최종평가 검토/보완의견 반영

2023. 03 ISP 산출물 최종 작성 완료
* ISP 최종결과보고서,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시스템구축 RFP 초안 등

2023.04 ISP 검토 신청 완료('23.4)





연구산업 거래플랫폼 ISP 수립 보고서

연구산업 기업 투자유치 지원('22~'23)

국내 연구산업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지원

(1단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기업 창업단계별 성장 프로세스, BM 구축, 기업가치평가, IR자료 작성 등 투자유치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총 2회차(회차별 16시간) 교육, 총 41명 수강('22.7.~'22.9.)
* 총 2회차(회차별 16시간) 교육, 총 42명 수강('23.6.)

(2단계) 투자유치 심층 컨설팅

1:1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업별 IR 디자인 고도화, IR 피칭 트레이닝, 모의 IR 등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진행

* 총 2회차(회차별 16시간) 교육, 총 41명 수강('22.7.~'22.9.)
* 총 2회차(회차별 16시간) 교육, 총 42명 수강('23.6.)

(3단계) 투자유치 설명회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행사 내 프로그램 통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IR 피칭 및 1:1 투자 상담회 진행

* 총 10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 및 2개 기업 2.9억 원 투자유치('22.12.08)
* 총 32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IR 및 22건의 투자 상담 진행('23.11.15)

<단계별 연구산업 기업 투자유치 지원 과정>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심층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03 연구산업 분야별 맞춤형 R&D 지원

연구산업 분야별 R&D 지원사업

기술혁신 기반으로 기업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산업 분야별 육성사업 등 R&D 사업 지원 추진
* '23년 6개 사업에 510억원의 예산 기반으로 연구산업 분야별 육성 지원

[2023년 연구산업육성 지원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산업육성	연구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 창업 지원, 산업 기분 구축 등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19,158
연구장비	연구장비산업육성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 개발, 성능고도화 및 기반조성,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육성	6,461
연구재료	연구재료 개발·확산지원	연구재료 개발, 상용화 개발, 확산지원을 통한 연구재료 산업 생태계 조성	4,400
연구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4,480
연구장비	미래선도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	미래 선도연구장비 분야 선도를 위해 미래수요와 해당 선도연구장비 개발 사이의 공백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	11,702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장비	(신규)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지역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R&D 성과 및 생산성 제고	4,800



연구산업 네트워킹 강화 지원

··· 대외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산업 홍보 및 네트워킹 구축 ···

연구산업의 대외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원 정책, 산업 현황, 기업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01 연구산업 홍보

연구산업 홍보를 위한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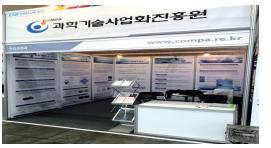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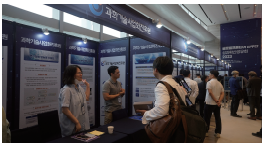
연구산업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유관 행사 및 학회 등 참여하여 홍보 부스 운영, 정책 소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유관 행사 참여

정책 및 서비스 수혜자(연구자, 기업) 참여하는 부처별 및 유관 행사 참여를 통해 연구산업 지속적 홍보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 홍보물(브로셔) 제작 배포, 연구산업 개념 및 지원 정책(사업) 발표

[2023년 연구산업 홍보 위한 유관행사 참여 현황]

구분	행사명	형태	주요 내용	비고
4월 (4.18~21)	Korea Lab 2023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부스 운영	· 연구산업 홍보 책자 배포 · 연구산업 정책 및 지원 사업 홍보	
6월	2023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공동 워크숍 (6.10)	연구산업 소개	· 연구산업 홍보 책자 배포 및 지원사업 홍보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성과확산 공유회 (6.20)	부스 운영	· 연구산업 홍보 책자 배포 및 연구 산업 정책 홍보	
7월	2023 나노코리아 (7.5~7)	부스 운영	· 미래선도연구 장비 사업 및 진흥원 지원 사업 홍보	

▸▸ 유관 학회 참여

연구산업 수요자 및 공급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유관학회를 선별하여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주요 내용 발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산업 주체(기업, 연구자 등)가 참여하는 정책 발굴 위한 세미나 개최

[2023년 연구산업 홍보 위한 유관학회 참여 현황]

구분	행사명	형태	주요 내용
5월	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5.10~12)	성과발표 /부스운영	‣ 미래선도연구장비사업 연구성과 발표
	한국바이오칩학회 춘계학술대회 (5.31~6.2)	정책소개/ 부스운영	‣ 연구장비산업진흥 정책 발표 및 지원사업
7월 (7.13)	한국생산제조학회 추계학술대회	사업 현황 소개/ 부스 운영	‣ 생산·제조 기술, 시스템 관련 대학·출연(연) 연구자 및 유관 기업 대상 시작품 산업 주제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표 및 홍보 부스 운영
8월 (8.25)	한국기술혁신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구산업 동향 발표	‣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중 시작품 산업 주제 주요 내용 발표 및 전문가 토의 참여
9월 (9.15)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 프로그램 (세미나) 운영	‣ 연구산업 분야별(주문연구, 연구관리) 우수 사례 발표 ‣ 연구산업 지원 정책 방안 수립 위한 참석자 간 패널 토론
11월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11.2)	세션 프로그램 (세미나) 운영	‣ 연구개발서비스 및 연구장비 분야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성장 사례 발표 ‣ 연구산업 지원 정책 수립 위한 전문가-참석자 간 패널 토론
	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 (11.15~17)	정책소개 /부스운영	‣ 연구장비산업진흥 정책 발표 ‣ 연구장비 분야 지원사업 홍보 부스 운영

[학회 연계 연구산업 네트워킹 현장]



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한국바이오칩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한국생산제조학회 추계학술대회(7월)



한국기술혁신학회 하계학술대회(8월)



한국정책학회(9월)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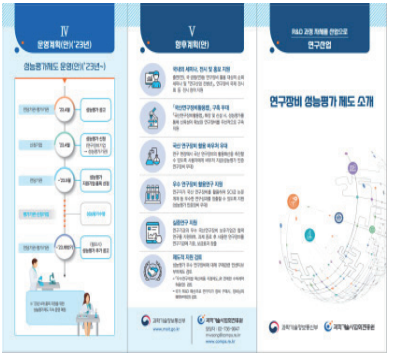
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11월)

▸▸ 연구산업 정책 및 기업 홍보 자료 제작·발간

연구산업 정책 및 지원 사업 홍보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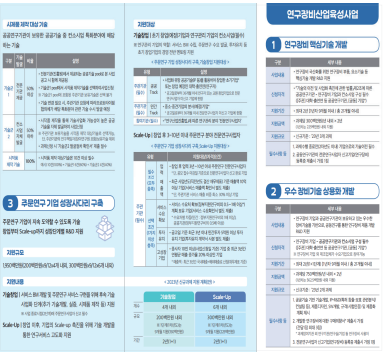


연구산업 소개 리플렛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2023년 연구산업 관련 R&D 지원사업 소개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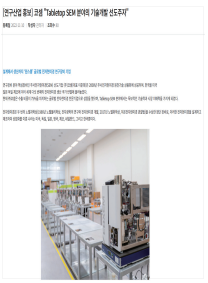
연구산업 기업의 주요 활동 및 성과 등 기업의 성장 소개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게재

* 진흥원 홈페이지 연구산업 홍보 ZONE 업로드
(https://www.compa.re.kr/cop/bbs/rnw/selectBoardList.do)

[연구산업 기업 소개 온라인 게시물 게재 현황]

연번	게재 일자	분야	주요 내용
1	2022-11-10	연구장비	㈜영인에이스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	2022-11-10	연구장비	코셈 "Tabletop SEM 분야의 기술개발 선도주자"
3	2022-11-30	주문연구	㈜피디젠 "AI알고리즘 활용 약물 효능 및 독성 사전 스크리닝 서비스 플랫폼 개발"
4	2022-12-20	연구재료	클랩 "유기물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는 R&D 전문기업"
5	2022-12-29	주문연구	스몰머신즈 "Think small"
6	2023-04-26	주문연구	셀앤매터 "줄기세포 활용 전문기업"
7	2023-05-25	주문연구	모이모션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 디바이스 제작"
8	2023-06-30	연구재료	㈜그래핀올 "고품질 그래핀 소재 공급"
9	2023-07-17	주문연구	랩인큐브㈜ "InCube 플랫폼 기술"
10	2023-08-30	연구장비	토트 "혁신적 기술로 선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및 로봇 솔루션 기업"
11	2023-09-26	주문연구	㈜노드큐어 "유효성 평가 전문기업"
12	2023-09-26	연구장비	나노스코프시스템즈㈜ "마이크로 열분석 장비-열반사 현미경"
13	2023-10-23	주문연구	㈜놀라바이오 "작물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14	2023-11-23	주문연구	럼버원랩스(Lumber 1 Labs), 친환경 목재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기여
15	2023-12-28	연구장비	파크시스템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필수장비, 원자현미경 전문기업"









연구산업 홍보 zone과 분야별 연구산업 기업 소개 자료 업로드 현황

02 연구산업 행사 기획 및 운영

연구산업 홍보를 위한 주요 활동

연구산업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학회 연계 세미나 개최, 유관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연구산업 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계 제1회 연구산업 세미나, '23.9.15

「연구산업 발전 위한 연구산업기업과 공공연구기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구산업 분야별 우수 사례 발표, 연구산업 발전 방안 모색 위한 참석자 간 현장 토론을 통한 연구산업 발전 방안 모색

* 연구개발서비스(주문연구, 연구관리)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계 연구산업 성장과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23.11.2

연구산업 주요 분야별*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성장 사례 발표, 연구산업 및 연구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패널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 모색

* 연구개발서비스(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계
연구산업
성장과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참 석 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서비스 및 연구장비 분야 연구산업 기업, 산·학·연 관계자 등
주요내용
연구산업 정책, 분야별 동향 및 우수 사례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통한 연구산업 발전 방안 모색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5:00~15:05 5' 개회 및 인사 말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5~15:10 5' 환영사(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5:10~15:25 15' | 연구산업 정책 및 동향 발표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발표주제 1 : 연구산업 정책 및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시작품과 연구기획·관리 중심) 동향
• 발표주제 2 : 연구장비산업지원 정책 및 산업 동향
15:25~16:10 45' | 사례 발표 | 분야별 우수 연구산업 기업 사례
파동한계이커연구소 이충일 대표
• 주요연구 :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성장 사례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송주영 대표
• 연구분야 : R&D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성장 사례
나노스코프시스템즈 전봉선 대표
• 연구장비 : 연구장비 전문기업 성장 사례
16:10~16:55 45' | 패널토론 |
• 주제 : 연구산업 발전 위한 연구산업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협력 방안
• 좌장 : 비즈니스 전략 연구소 송주영 대표
• 토론자
주문연구 분야 파동한계이커연구소 이충일 대표
연구장비 분야 나노스코프시스템즈 전봉선 대표
주문연구 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원석 융합기술성용화실장
연구장비 분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태원 연구장비산업육성장장
정책 분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일 인재성경능실장
16:55~17:00 5' 폐회
일시 2023.11.2.(목) 15:00~17:00 장소 제주도 한화리조트(D4~2)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3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2/2023 공동 주관

R&D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의 장 마련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의 공동 주관사로 차년도 정부R&D 사업 홍보 위한 설명회와 연구산업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22년> '22.12.7.(수)~8.(목)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① 투자유치-데모데이
10개의 연구산업 기업(주문연구, 연구관리)이 VC, AC 등 투자기관 및 투자심사역 대상 투자설명회(IR)를 통해 투자 네트워크 형성과 외부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② 연구산업 정부R&D 사업설명회 :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장비, 연구재료의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연구산업 R&D 사업 소개





<2023년> '23.11.14.(화)~15.(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① 정부 R&D 사업 설명회 : 2024년 연구산업 지원 R&D 사업 및 연구산업 관련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소개
* 2022년 과기부 내 지원 연구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서 중기부 사업으로 확대 추진





② 창업 초기 연구산업 기업 투자설명회 : 초기 유망 연구산업기업의 투자자 대상 IR 발표 및 현장 투자상담 진행하여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투자유치 프로그램 기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순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③ 미래선도 연구장비 기술협력 포럼 : 미래선도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사업 주요 성과를 연구장비 기업과 공유(11.15)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사업 수행 지원

···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 ···

연구산업 관련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을 지원하고 각 지역별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기술역량강화와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

지역주도의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통해 연구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단지 신규 지정 추진

※ 근거 :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등

▸▸ 연구산업진흥단지 개념

연구산업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예정인 지역으로, 연구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기업 집적구역(2㎢ 이내) + 연구산업 지원기관*의 부지로 구성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2022. 02 연구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지침 제정

2022. 10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공모

2022. 11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심사 검토
* 단지 지정 신청(5개 지자체), 전문가위원회(9인) 구성, 지정심사 서면 검토 등

2023. 01 지정심사 현장 실사('22.12) 및 종합 평가

2023. 02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고시
* (대전) 연구장비, (부산) 디지털융합 주문연구

[2023년 지정 연구산업진흥단지 개요]

지역	특화 분야	기업 집적구역		연구산업 지원기관
		위치	면적	
대전	· 연구장비	유성구 탑립·용산·관평동, 전민동, 둔곡동 일원	1.98㎢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산	· 디지털융합 연구개발 서비스	해운대구 우동, 재송동 일원	1.23㎢	· 부산대학교 · 부경대학교

[연구산업진흥단지 개요]



▸▸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수행

◉ 사업 기획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 수립 지원하여 사업 추진 위한 예산 확보**

*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 성과 목표 및 지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성과 활용 방안, 파급효과 등

** 2023년 신규 사업으로 4,800백만원 예산 확보(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추진 예정)

◉ 사업 수행

2023년 사업 시행계획 토대로 2개 지정 지역단지 성장 위한 핵심 기반 구축과 단지별 입주 연구사업자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지원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관리

◉ 매월 지역별 단지 유관기관간 협의체 및 간담회 참여하여 연구산업 관련 정보 교류 및 향후 추진 방안 수립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추진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2023년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역별 네트워크 교류회

◉ '23년 지정 단지 현장방문 실시하여 지역별 진흥단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목표 달성도 점검 추진('23.10월)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2023년 연구산업진흥단지 현장점검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 시행 지원

···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및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성과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과 성장 정체로 연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의 엄중한 관리하에 평가기관들이 선정되었으며, '23년 최초 연구장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발족식



평가기관(기초연) 현장점검



평가기관(표준연) 현장점검

01 연구장비성능평가 중점·우선 지원 연구장비 품목 발굴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도입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 및 시행령을 통해 연구장비 진흥을 위한 성능평가 제도 도입 추진

›› 연구산업 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및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제도 마련 …

2021. 10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2022. 01 ~03
국산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유전자 증폭장치, 주사전자현미경 대상선정

2023. 04
연구장비 성능평가 운영지침 시행
*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연구장비 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추진체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 지정(~'22)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시행('23~)을 위한 '성능평가기관'지정

- 주사전자현미경(SEM),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PCR)
  * 성능평가 제도 사전수요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품목 우선 시행
- 해당 연구장비 품목의 원할한 성능평가를 위한 절차서 및 인력·장비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연구장비의 절차서 개발 및 운영·평가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 선정결과 : 주사전자현미경 2기관,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1기관 선정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 지정 기관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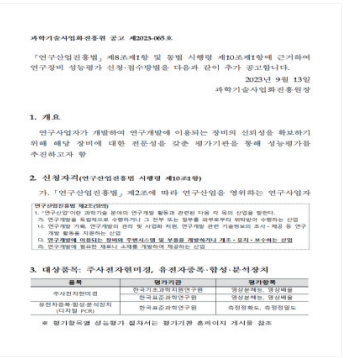
품목	대상기관	평가항목
주사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디지털 PC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정확도, 측정정밀도

02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운영 및 사업 시행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도입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 장비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성능평가 사업 지원

·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운영('23년~)
·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공고('23.4월, 7월, 9월)
·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고도화(신규 품목발굴 및 절차서 개발 등)
· 성능평가 후속 지원방안 발굴·고도화(성능평가 연계지원방안 발굴 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제2023-005호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 신청·접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1. 개요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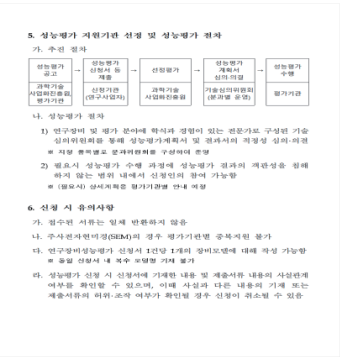
2. 신청자격(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1항)

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

3. 대상품목: 주사전자현미경,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품목	평가기관	평가항목
주사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디지털 PC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정확도, 측정정밀도

※ 평가항목별 성능평가 절차서는 평가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5. 성능평가 지원기관 선정 및 성능평가 절차

가. 추진 절차

성능평가 공고 → 성능평가 신청서 등 제출 → 선정평가 → 성능평가 계획서 심의·의결 → 성능평가 수행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평가기관 / 신청기관(연구사업자)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기술심의위원회(분과별 운영) / 평가기관

나. 성능평가 절차

1) 연구장비 및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계획서 및 절차서의 적정성 심의·의결

※ 자정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필요시 성능평가 수행 과정에 성능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 가능함

※ (필요시) 장비제작사를 참가기관별 안내 예정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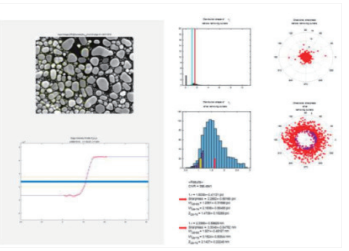
나. 주사전자현미경(SEM)의 경우 평가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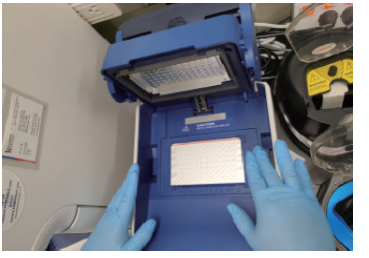
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1건당 1개의 장비모델에 대해 작성 가능함

※ 동일 신청서 내 복수 모델별 기재 불가

라. 성능평가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사업





연구장비 성능평가 수행 과정

부록

1 | 연구산업진흥법 56

2 | 연구산업진흥 관련 지정 고시 61

3 | 연구산업 관련 발간물 목록 68

01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 · 절차 · 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 · 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 ·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

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 설립)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075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02 연구산업진흥 관련 지정 고시물 목록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2022.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2장 진흥단지의 지정 기준

제3조(지정공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업집적구역
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제4조(지정규모)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km^2 이하로 한다.

제5조(지정요건)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제6조(시 · 도지사의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 ·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 · 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 정도 평가
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

② 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진흥단지의 관리

제10조(관리권자 등) ① 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 · 도지사로 한다.

② 진흥단지의 관리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단지에 입주한 연구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
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 유지 · 보수 및 개량

③ 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2022.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5호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비"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절차서"란 연구장비의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5.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란 평가기관이 성능평가 수행에 앞서 성능평가 절차서에 따라 성능평가 항목, 방법, 기간 및 비용 등의 수행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6. "성능평가 결과서"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 결과서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성능평가 체계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
2.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 평가기관 관리 및 감독

제4조(전담기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에 관한 사업 시행 및 관리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3.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기술심의위원회)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
2. 평가기관이 보유한 성능평가 절차서의 적정성
3.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의 적정성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서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성능평가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장비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괄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대상 연구장비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통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 조정·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성능평가를 신청한 연구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기관에 소속된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기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 절차서 개발 및 수립
2. 성능평가 수행
3. 성능평가 결과서 작성 및 제공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7조(성능평가 안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능평가 대상 연구장비 품목과 평가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연구장비 품목별 성능평가 절차서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성능평가 신청) ①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능평가 계약 체결)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심의·의결한다.

③ 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흡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성능평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②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과정에서 성능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중단) ① 평가기관은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12조(성능평가 종료)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종료한 경우 성능평가 결과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결과서를 심의·의결한다.
③ 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재수행하거나 성능평가 결과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장 평가기관 지정 및 감독

제13조(평가기관 지정요건)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정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평가기관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성능평가 비용

제16조(비용 부담)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산정) ①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한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금지행위) ① 신청인은 성능평가 결과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성능평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2022.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2호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1조에 따라「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 지정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	02-736-0047

○ 지정기간 : ~ '24. 12. 31.

※ 지정기간 만료 前 전담기관의 업무 실적·성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간 연장여부 검토

○ 담당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研)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 · 행사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위탁업무의 내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업무)	수행기관
1. 연구산업통계의 작성·관리	한국연구산업협회
2. 법 제6조제1항 ·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 변경신고 · 갱신신고의 접수 및 확인	한국연구산업협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한 조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 · 분석	한국연구산업협회

3.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03 연구산업 관련 발간물 목록

2023년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발간 월	분야	이슈페이퍼 제목
2023년 1월	연구장비	일본 연구장비 관련 동향 및 정책시사점 (연구장비 기업 현장 방문 중심)
2023년 2월	주문연구	국내 시작품·시제품 제작 산업 실태 및 시사점
2023년 3월	연구장비	연구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2023년 4월	연구관리	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23년 5월	연구장비	국산 연구장비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성과의 산업화 전환 사례 분석
2023년 6월	주문연구	의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서비스(CRO, CDO, CMO, CDMO) 동향 및 시사점
2023년 7월	연구장비	국산 연구장비 활용 우수 연구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23년 8월	연구관리	국내 R&D 기획·관리(PM)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2023년 9월	연구재료	연구재료 우수 사례 분석
2023년 10월	주문연구	글로벌 시험·검사·인증(TIC) 서비스 시장 분석
2023년 11월	연구재료	연구재료 정책·산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23년 12월	주문연구	글로벌 제약 R&D 아웃소싱 시장 분석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ANNUAL REPORT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발행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산업진흥본부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0 17층